

#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2022. 10.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

## I. 개요

### 1.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결정사항

####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최종보고 후 제15차 결정사항(2021. 9. 8.)

-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고제도는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실심의 충실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재판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함

#### ■ 제20차 결정사항(2022. 5. 11.자)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 중 복합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형태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을 혼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우선,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함. 다만,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원칙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필요최소한으로



함이 바람직함

- 현 단계에서도,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하여 추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 2.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의 구성 및 연구·검토 경과

- 대법원 상고심사제도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방안,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이 일응 도출되었으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세부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법률안 성안 작업 등이 필요함
- 이에 2022. 6. 14. 아래와 같이 「상고제도개선 실무추진 TF」(이하 '실무추진 TF')가 구성되어 5차례의 공식회의 및 수시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하여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였음

순번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기우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팀장
2	고홍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지원장	
3	김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4	이현복	대법원	재판연구원(부장판사)	
5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6	강영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7	곽동준	서울행정법원	판사	
간사	이재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판사)	



- 
- 실무추진 TF는 위와 같은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코트넷을 통하여 2022. 8. 24.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에 관하여, 2022. 9. 15.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하여 각 연구·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이하의 내용은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에 관한 실무추진 TF의 연구·검토 결과와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요약한 내용임



## II.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 방안

### 1.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개요

#### ▣ 현행 상고본안사건 절차 개요

상고장 제출	기록송부	상고기록 접수통지	상고이유서 제출	사건배당 (형사)	송달	답변서 제출	사건배당 (민사)	심리속행사유 심사기간 종료
	2주**	약 5일	20일	약 5일		10일		
		4개월(민사 심리속행 사유 심사기간)						
원심법원		대법원						

\* 검사만 상고한 불구속 사건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후 배당 실시

\*\* 민사사건 보정명령 존재 시 보정일부터 1주(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항)

▣ 개선방안의 개요: 현재 대법원에서 제출받고 있는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서 제출받고,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대법원에 기록 송부 ⇨ 대법원은 기록을 송부받은 즉시 사건배당 및 심리착수 (대법원에서의 사건 대기기간 최소화)

▣ 제도 도입의 취지: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상고심의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

▣ 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상고본안사건 절차 개요(안)

상고장 제출	상고이유서 제출	기록송부	사건배당	상고이유서 송달*	답변서 제출	심리속행사유 심사기간 종료
	60일	2주		약 5일	10일	
		4개월(민사 심리속행 사유 심사기간)				
원심법원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통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 송달

● 상고장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각하결정(민사) 또는 상고기각결정(형사)을 함 ⇨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가능
-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으면 2주 이내에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하고,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함께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

## 2.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TF 논의 결과

### 가. 변경되는 법조문

#### ■ [안]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TF의 검토 요지
  - 기간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실무상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상고이유서 준비기간을 반영하고 국민의 상고권 보장의 측면을 고려하여 60일로 하였음
  - 기산일과 관련하여,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기타의견이 있었음

#### ■ [안]제428조(상고이유서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 ①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상고이유서의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상고법원은 제2항의 답변서의 부분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TF의 검토 요지
  -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답변서까지 제출받게 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원심법원의 심사범위를 상고이유서의 기간 내 제출여부 등으로 한정할 이상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체류하는 기간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고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의견 정리되었음



-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이 송달할 것인지, 상고법원이 송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고, 상고법원이 송달하는 것을 [1안]으로, 원심법원이 송달하는 것을 [2안]으로 결정하였음 ⇨ 답변서가 원심법원으로 제출되어 추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방지

#### ■ [안]제429조(원심법원의 상고각하결정)

- ①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TF의 검토 요지

-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 그와 같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 일치
- 원심법원이 ‘법령에서 정한 상고이유서의 방식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원심법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원심법원의 심사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이상 큰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법원의 심사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의견 일치
- 원심법원의 결정 형식과 관련하여, ‘상고각하결정’이 다수의견, ‘상고기각결정’이 소수의견이었음
-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규정(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두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 ■ 기타 변경 조문(안)

##### 제429조의2(상고기록의 송부)

제429조 규정에 따른 상고각하결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붙여 상고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 제429조의3(상고법원의 상고각하결정)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



이 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나. 기타 논의

### ■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

#### 제426조(소송기록 접수통지)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TF의 검토 요지

- 상고이유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될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의 기산일과 관련한 의미는 없어지게 되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 등을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 일치

## 3.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TF 논의 결과

### 가. 변경되는 법조문

#### ■ [안]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 ② [현행]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상고이유서의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현행]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현행]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TF의 검토 요지

- 민사상고절차와 마찬가지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을



정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까지만 제출받은 후 곧바로 상고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상고법원에서 상고이유서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안]제380조(상고기각결정)

-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TF의 검토 요지

- 민사상고절차와 같은 이유로,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의 기한 내 제출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기존 형사소송법이 제376조, 제380조에서 형식적 사항 결여에 대하여 ‘상고기각결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이유서 기한 내 부제출’ 시 심판형태를 민사상고절차와 달리 ‘상고기각결정’으로 함

#### ■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 규정 신설[안]

##### 제415조의2(재항고이유서의 제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 제415조의3(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재항고기각 결정)

- ① 재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재항고장에 이유의 기재



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재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TF의 검토 요지

- 현행법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재 실무는 형사 재항고사건에서 재항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은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운용되고 있는바,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민사소송법과 같이 준용규정을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도의 변경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재항고이유서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

#### ■ [안]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① [현행]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4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 TF의 검토 요지

- 상고이유서 원심제출에 따른 상고심의 심리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항소심, 상고심 모두 구속기간의 4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도출함
- 상고심에 한하여 구속기간의 4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구속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기타의견 있었음

#### ■ 기타 변경 조문(안)



####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 제380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나. 기타 논의

#### ■ 소송기록접수통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1와 같음]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2과 같음]



### Ⅲ.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도입 방안

#### 1. 현행 상고이유의 체계

##### 가. 민사 등 사건

###### 1) 개관

- 상고이유는 ① 민사소송법(상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 및 ② 소액 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있고, 심리불속행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음
-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심리속행 기준은 심리를 속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소액 사건과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 모두에 적용됨
- 결국, 민사 등 사건에서 상고이유는 1단계로서 상고심특례법상 심리속행사유를 갖추고, 2단계로서 민사소송법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를 갖추어야 함
  - 1단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
  - 2단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본안판단으로서 상고기각판결

###### 2)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 ⇨ 절대적 상고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로 구성

###### ■ ①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대적 상고이유와 달리 문언상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제한되지 아니함
  - 특히 제1호 ~ 제5호의 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움
- 제6호는 이른바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 ‘이유불비’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인정을 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포함되고, 판결주문에 관한 이유불비, 구체적 사실확정에 관한 이유불비, 법령적용에 관한 이유불비로 구분
    - 소위 말하는 ‘판단누락’, ‘판단유탈’이 제6호의 ‘이유불비’에 포함되는 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이에 해당한다고 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 ‘이유모순’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일관성이 없고 이유로서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판결이유 기재에 있는 모순이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유모순이 있어야 함

## ■ ② 상대적 상고이유(제423조)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됨
  - cf. 1961년 개정 전 민소법: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은 보통 ‘법령위반’으로 표현되고, 실제적, 절차적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매우 범위가 넓은(경험칙, 채증법칙, 증명책임, 석명 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심리미진도 여기에 포함)
  - ‘헌법위반’의 의미



- 헌법의 해석을 그르친 것, 그 규정의 내용과 그 시간적 효력에 관하여 오해한 것으로서 이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게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결과가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원심판결에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란 법률을 제외하고 명령·규칙이 위헌으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하게 다스려 심판하였다든가 반대로 합헌이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라고 전제하여 심판한 것이 포함됨. 실제로는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 중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예컨대, 피고의 생활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의 이행을 명함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 추상적으로 위헌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어떠한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헌법의 어떠한 조항에 위반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헌위법의 주장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음[주석 민사소송법(Ⅵ), 271면]

- ‘법률·명령·규칙 위반’의 의미

-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으로서의 법률뿐 아니라 법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모든 경우가 이에 포함됨(관습법, 조약도 포함됨). 명령은 형식이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이에 해당되고, 규칙은 명령의 형식을 가지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입법형식을 말함(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등)[주석 민사소송법(Ⅵ), 280면 이하]
- 경험칙 위반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1566 판결 등)

■ [3] 재심사유(제451조)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반면(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민사소송법은 재심사유를 상고이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상고이유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여 상고이유로 인정됨<sup>1)</sup>
  - 만일 재심사유가 상고이유로 되지 아니한다면 판결을 확정시킨 후에 재심을 신청하여야만 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
- 재심사유 중 1~3호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파기사유가 되나, 나머지 각 호의 재심사유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취급해야 하는지, 상대적 상고이유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음[주석 민사소송법 (VI), 329면 이하]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5727 판결 등



### 3)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법률 등의 헌법위반, 명령 등의 법률위반(상고심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 제4조 제1항 제2호와 유사한 의미로 봄)
- 제2호: 판례 위반(실질적으로 상고심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 제4조 제1항 제3호와 동일)

###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 적용범위: 민사, 가사, 행정(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 포함)



##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헌법위반, 헌법부당해석(민사소송법 제423조의 ‘헌법위반’과 같은 의미로 봄)
- 제2호: 명령 등의 법률위반(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와 유사한 의미로서 하위법규인 명령·규칙·처분이 상위법규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 때를 의미)
- 제3호: 판례 위반(실질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와 같은 의미로서 ‘판례 위반’을 의미한다고 봄)
- 제4호: 판례 부존재 또는 판례 변경 필요
- 제5호: ‘중대한’ 법령위반(중요한 채증법칙 위반, 현저한 경험칙 위반, 현저한 심리미진 등을 포함)
  - [참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와의 차이
    - ‘중대한 법령위반’에는 논리칙, 경험칙 등 채증법칙 위반이 포함되므로 사실인정 과정에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절차법령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 논의 시 제4조 제1항 5호의 원안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였으나,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심리속행사유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대한 법령위반”으로 바뀜(국회 속기록 참조)]
- 제6호: 민사소송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제1~5호

## 나. 형사 사건

### 1) 개관

- ▣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없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열거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 경우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형사소송법 제380조)

**제380조(상고기각결정)**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 ■ ① 상고이유(제383조)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민사소송법과 달리 '절대적 상고이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2, 3호는 절대적 상고이유로 해석되고, 제1, 4호는 상대적 상고이유로 해석됨
- 각 사유의 의미
  -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실체법, 절차법 모두 포함)
  - 제2호: 형의 폐지, 변경 및 사면
  - 제3호: 재심청구 사유
  - 제4호: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양형부당(각 선고형 10년 이상인 경우만)

### ■ ② 재심청구의 사유(제420조)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다. 상고이유 등 정리

### ■ 민사 등 사건

1단계: <심리속행 사유(아래 사유 +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함)>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헌법위반</li> <li>2. 명령 등의 법률위반</li> <li>3. 판례위반</li> <li>4. 판례 부재 또는 변경 필요</li> <li>5. 그 외 중대한 법령위반</li> <li>6. 민소법상 절대적 상고이유 1~5호</li> </ul>	<p>각호 사유 불포함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상고기록 송부 시부터 4개월 이내)</p>
2단계: <민소법상 상고이유> 판단 (소액 아닌 사건)	2단계: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판단 (소액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적 상고이유 1 ~ 5. 명백한 절차위반 6. 이유불비, 이유모순(판단누락 포함)</li> <li>○ 상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형소법상 상대적 상고이유 1호와 사실상 동일)</li> <li>○ 재심사유(판례에 의하여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률 등의 헌법위반 + 명령 등의 법률위반</li> <li>2. 판례위반</li> </ul>

### ■ 형사사건

1단계: <상고기각 결정 여부 판단>
아래의 법정 상고이유 기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결정으로 상고기각
2단계: <형소법상 상고이유>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적 상고이유 1. 형의 폐지·변경, 사면 2. 재심청구 사유</li> <li>○ 상대적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령위반(민소법상 상대적 상고이유와 실질 동일) 2.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양형부당(각 선고형 10년 이상인 경우)</li> </ul>



## 2. 상고이유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 개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모두 상고허가제(또는 상고수리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독일, 일본의 제도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독일

- 민사사건에 상고허가제 채택, 형사사건은 중죄에 한하여 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의 판단을 받음

#### ■ 민사사건

- 2002. 1. 1. 독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 신민사소송법은 종전의 가액상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상고제로 통일
- 이에 따라 상고심을 법의 발전, 판례의 통일과 중요한 법률문제의 해명 등 일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바꾸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당부분 없앴다는 평가<sup>2)</sup>
- 상고의 허가(개정 민사소송법 제543조)
  - 상고가 가능한 경우
    - ① 항소법원이 판결에서 상고를 허가한 경우<sup>3)</sup>
    - ② 상고법원이 상고불허가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상고 허가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상고를 허가하여야 함
    - ① 법률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 ② 법의 형성 또는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고심의 재판이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21), 890.

3)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음. 상고허가는 항소심 판결에서 결정하고, 언급이 없을 때는 불허가 결정을 한 것임. 한편, 개정 민소법 제543조 제1항 제1호(항소법원이 판결에서 상고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는 규정)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받음



## 필요한 경우

### ● 독일 민사소송법

#### [독일 민사소송법<sup>4)</sup>]

##### 제543조 허가상고

① 상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허용된다.

1. 항소법원이 판결에서 허가한 경우
2. 상고법원이 상고불허가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상고를 허가한 경우

② 상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허가한다.

1. 법률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또는
  2. 법의 형성 또는 판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고심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 상고법원은 항소법원의 허가에 기속된다.

##### 제545조 상고이유

① 상고는 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 제546조 법령위반의 개념

법령위반은 범규범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재판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판결을 한 법원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때
2. 법률에 따라 직무수행으로부터 제척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때, 단, 기피신청으로 이러한 장애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편파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았고, 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선언되었음에도 그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4. 당사자 일방이 소송절차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되지 못한 때, 단, 소송수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 재판이 소송절차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변론에 기초한 것인 때
6. 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에 이유를 붙이지 않은 때

## ■ 형사사건

● 상고 요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한 허가 등 불요

- 상고이유로는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야 함

- 절차적 상고이유: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소송절차 과정에 관한 법령위반

4)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정보에서의 번역문을 그대로 옮김.



- 실제적 상고이유: 절차적 상고이유 관련 규정 이외의 법령위반
  - 사실심 법관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실제법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법률적용)를 심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인정이 법률적용을 위한 적합하고 적절한 기초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증거판단에서의 법률위반은 실제적 상고이유가 되지만, 상고법원은 증거판단에 대하여 법률적 하자의 측면에서만 심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증거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음.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경험칙·논리칙 위반, 모순되는 증거판단 등을 실제적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음

### 3) 일본

#### ■ 민사사건

- 1996. 6. 26. 개정(1998. 1. 1. 시행)된新民사소송법에 재량상고제도를 도입
- 종래 절대적 상고이유로 되어 있던 권리상고이유에 관하여 제312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
  -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을 권리상고이유로 삼음
  - 고등재판소에 하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비교적 경한 사건의 상고이유가 더 넓다는 비판, 다만 최고재판소의 파기 사유에는 포함(제325조 제2항)
- 이러한 이유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318조를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수리한 경우에만 최고재판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일본 민사소송법

[일본 민사소송법<sup>5)</sup>  
제312조(상고이유)]

5) 국회법률도서관 외국법률정보에서의 번역문을 그대로 옮김.



- ① 상고는 판결에 헌법해석의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헌법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는 할 수 있다.
- ② 상고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호의 사유는 제34조 제2항(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재판소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한 때
  - 2의2.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의 전속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제6조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재판소가 제1심의 종국판결을 한 경우에 해당 소송이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할 때를 제외한다)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구술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③ 고등재판소에 하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318조(상고수리신청)

- ① 상고할 재판소가 최고재판소인 경우에 최고재판소는 원심판결에 **최고재판소의 판례(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대심원이나 상고재판소 또는 항소재판소인 고등재판소의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 있는 사건이거나 그 밖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된 사건**을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고심으로서 수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최고재판소는 상고수리신청의 이유 가운데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325조(파기환송 등)

- ② 상고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제3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3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원심재판소에 환송하거나 동 등한 다른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 ■ 형사사건

- 1948년 시행 형사소송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헌법위반과 판례저촉만 권리상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법령위반 문제는 중요한 법령 해석이 쟁점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허용

### ■ 현행 일본 상고제도 요약



	민사(1996년 개정, 1998년 시행)	형사(1948년 시행)
권리상고	헌법위반, 중대한 절차법 위반	헌법위반, 판례 저촉
상고수리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 포함하는 경우(최고재 재량) <sup>6)</sup>	좌동
직권파기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한 법령위반	법령위반,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으로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 4) 미국

##### ▣ 연방대법원 규칙 제10조에 의한 구체적인 상고허가 기준

- 상고허가는 다음 예시와 같이 중대한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 행위
  - ①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다른 연방항소법원 · 주 최고법원 판결 등과 상충하거나 통상의 재판절차에서 과도하게 일탈하는 경우
  - ② 중요한 연방문제에 관한 주 최고법원 판결이 다른 주 최고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경우
  - ③ 중요한 연방문제에 관하여 주 법원이나 연방항소법원이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하거나 이에 저촉하여 판결한 경우
- 사실관계 판단의 오류나 법적용의 잘못은 대개 상고허가 사유가 안 됨

#### 5) 영국

##### ▣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제 채택

##### ▣ 대법원은 당해사건에 대하여, 일반 공중에게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

6) 재량의 주체에 관하여 ① 상고수리제(최고재판소), ② 상고허가제(원심재판소)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가,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최고재판소 스스로 상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수리제를 확정하게 되었음



하고 있어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상고를 허가함

### 3.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에 관한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 가. 개요

##### 1) 대법원 상고심사제의 요지

- 상고심은 법률심 ☞ 대법원은 통일된 법령 해석과 법적 기준 제시가 필요한 사건을 집중 처리함으로써 온전한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 상고의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구분
  - [법정상고] ‘명백성 심사’를 통하여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본안심리를 진행
  - [심사상고]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등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진행
- 본안 절차와 본안 전 심사 절차 구별을 명확히 함 ⇨ 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 심사 강화 ☞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에 심리 집중
-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 2)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형태

-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제도 도입하고, 상고심특례법은 폐지
  - ① 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새로운 명칭의 특례법 제정 방안, ③ 상고심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으나, 큰 틀에서의 상고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의 도입을 전제
  - 실무추진 TF 선행 연구검토 결과인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도입을 전제



로 제도 설계함 ⇨ 원심에서 상고이유서까지 제출 받은 후 대법원에 기록 송부

## 나. 주요 단계별 「대법원 상고심사제」 내용 개관

### 1)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외에 상고심사신청서 및 상고심사이유서라는 별도 명칭의 서면은 두지 않음
- 원심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만 심사 ⇨ 상고이유서 미제출시 상고각하결정(민사) / 상고기각결정(형사)

### 2) 상고심의 본안 전 심사

- 소부에서 심사를 하되, 전담부를 별도로 들지 여부는 법률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
- 적법한 상고이유 포함 여부 심사
  - [법정상고] 법정상고사유는 기존의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상고사유는 원칙적으로<sup>7)</sup> 원심파기의 결론에 이르게 됨 → 본안전 심사에서는 ‘명백히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을 판단
  - [참고] 일본 민소법 제317조 제2항 “상고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상고이유가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절대적 상고이유)에 명백히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심사상고] 법정상고와 달리 상고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 필요
- 본안전심사에 따른 처리
  - [법정상고] 명백히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상고기각결정

7)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으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심파기의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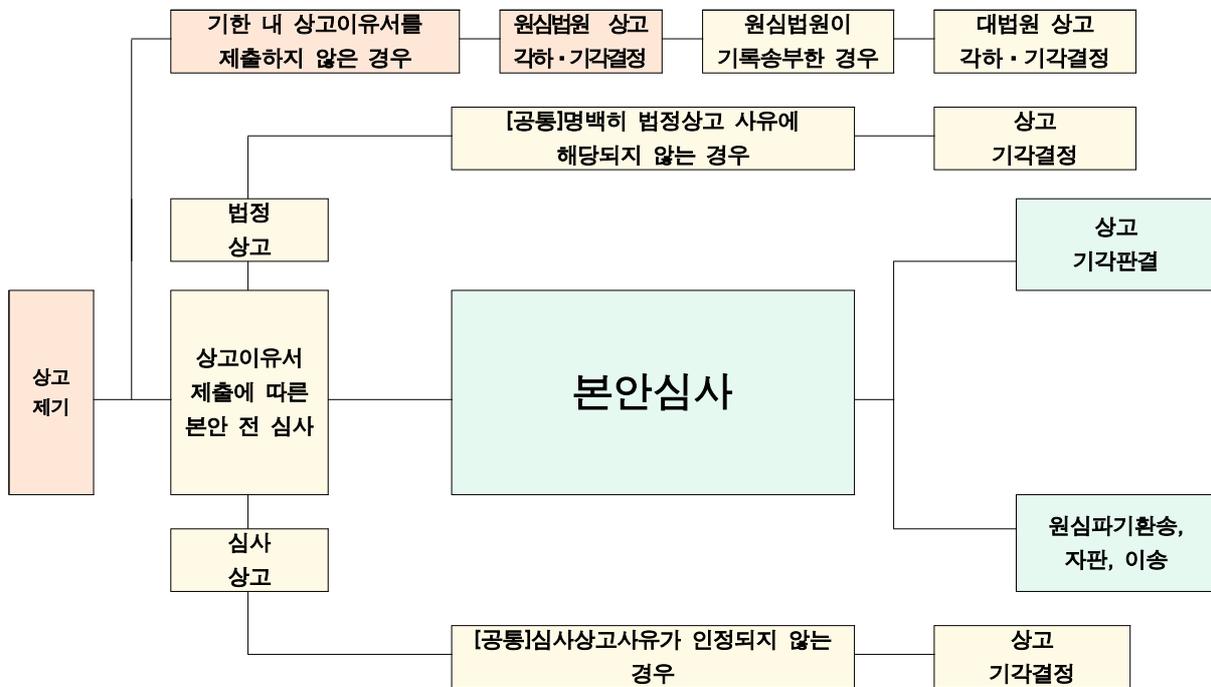


- [심사상고] 심사상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고기각결정
- 법정상고사유 또는 심사상고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안전심사인용에 관한 별도의 결정 등 없이 본안심사를 진행

#### ▣ 소송신속 도모

- 현행 심리불속행 기간을 고려하여, 민사에 한하여 본안전심사 기간을 4개월(기산일은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상고기각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함

### 3) 「대법원 상고심사제」 절차 흐름도



#### 다. 민사 법정상고 사유 / 심사상고 사유

##### 1)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법정상고/심사상고 사유

#### ▣ 법정상고사유

①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 중 1호 내지 5호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③ 법률 등의 헌법위반여부 판단 부당(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호)

## ④ 명령 등의 법률위반여부 판단 부당(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1호, 심리속행사유 2호)

## ⑤ 대법원 판례 위반(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 2호, 심리속행사유 3호)

## ⑥ 판례의 부재 또는 판례의 변경 필요(심리속행사유 4호)

### ■ 심사상고사유

-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법의 형성·발전에 필요한 경우
- 공적 이익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한 경우



## 2) 실무추진 TF 논의결과 요지

### ▣ 법정상고사유

- 법정상고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 심사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되어야 함 ⇨ 비교적 해당 여부가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사유로 함이 타당함
- ①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 중 1호 내지 5호,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는 일응 법정상고 사유로 볼 수 있음
- 다만, ③ 법률 등의 헌법위반여부 판단 부당, ④ 명령 등의 법률위반여부 판단 부당, ⑤ 대법원 판례 위반, ⑥ 판례의 부재 또는 판례의 변경 필요의 사유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정(심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정상고 사유보다는 심사상고 사유로 함이 적절함

### ▣ 심사상고사유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사상고 대상 기준을 대체로 반영하되,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일치

## 3) 실무추진 TF 논의결과에 따른 민사소송법 개정안

### ▣ [안]제423조(상고이유에 대한 심사)

- ① 상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상고는 다음 각호를 이유로 하는 때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고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1. 법률·명령·규칙의 형성, 발전에 필요하거나 그에 대한 해석,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때
  2. 공적 이익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때
  3.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때



- ③ 상고는 제2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고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4.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제423조 제2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 정책법원 기능에 부합

● 제423조 제3항은 법률심으로서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능에 부합

● 실무추진 TF 검토요지

- 제1항은 상고심이 법률심임을 선언하는 규정이라는 점이 선명해지도록 문구를 변경하고, 제2항에서는 상고심의 심판은 원칙적으로 심사상고를 통하여 실질심리 사건을 선별하는 것임을 선언함(심사상고가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법정상고 사유를 제424조에, 심사상고 사유를 제423조에 배치)
- 기존 제423조 조문제목 ‘상고이유’는 단순히 ‘상대적 상고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는바, 상고심사제의 도입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 명칭을 변경
- 제2항 각호 심사상고사유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심사상고 대상 기준을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반영하되, 중복을 피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였음

#### ■ [안]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7.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8.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9.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10.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11. 상고를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2.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②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 ■ [안]제429조의4(상고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제429조의4(상고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①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상고법원의 심사 결과 제423조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42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428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재항고 규정 정비: [안]제442조, [안]제443조

#####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실무추진 TF의 검토 요지

- 제423조 등 상고심 재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연동하여 재항고심 재판에 관한 규정을 개정
- 당초부터 성질상 재항고 절차와 부합하지 않는 사유(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들이 있으므로, 제443조 제2항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를 추가함

## 라. 형사 법정상고 사유 / 심사상고 사유

### 1)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법정상고 사유

#### ■ 법정상고사유

- 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현행 형소법상 절대적 상고이유(형의 폐지·변경 및 사면 + 재심사유)
- ③ 법률 등의 헌법위반여부 판단 부당
- ④ 명령 등의 법률위반여부 판단 부당
- ⑤ 대법원 판례 위반
- ⑥ 판례의 부재 또는 판례의 변경 필요

#### ■ 심사상고사유(민사와 동일)

-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법의 형성·발전에 필요한 경우
- 공적 이익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법령 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어 본안 심리가 필요한 경우

### 2) 실무추진 TF 논의결과 요지

- 법정상고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정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 심사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파기 대상이 되어야 함 ⇨ 비교적 해당



여부가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사유로 함이 타당함

- ② **현행 형소법상 절대적 상고이유(형의 폐지·변경 및 사면 + 재심사유)는 일응 법정상고 사유로 볼 수 있음**
- 다만, 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률 등의 헌법위반여부 판단 부당, ④ 명령 등의 법률위반여부 판단 부당, ⑤ 대법원 판례 위반, ⑥ 판례의 부재 또는 판례의 변경 필요 등은 민사와 마찬가지로 법정상고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현행 형사소송법과 비교할 때 상고이유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심사상고 사유로 반영할 필요 있음**

### 3) 실무추진 TF 논의결과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 ■ [안]제383조(상고이유)

- ① 상고는 다음 각호를 이유로 하는 때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고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1. 판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때
  3.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2.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 실무추진 TF의 검토 요지

- 심사상고사유(제1항) 제1, 3호는 상고제도개선특위에서는 법정상고사유로 제시한 것 → 그런데 해당 사유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전제로 하



는데, 민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같이, 이러한 경우는 법정상고의 심사체계에 맞지 아니함 → 심사상고사유로 설정

- 제1호는 현행법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라고 정하는데 이를 유지할 경우 단순한 법령적용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게 되는 바, 개정안에서는 유·무죄의 판단과 같이 ‘판결의 중요한 사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건으로 설정함

#### ■ [안]제380조(상고기각결정)

-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8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설명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을 반영하여 제380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하되, 심사상고/법정상고의 도입에 맞게 변경
- 제3항 전단 → 심사상고의 경우에 있어 본안전심사 내용
- 제3항 후단 → 법정상고의 경우에 있어서 본안전심사 내용

#### ■ [안]제384조(심판범위)

#####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8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 설명



- 제383조(상고이유) 개정에 따라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개정안 제38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는 현행과 같이 직권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사유들은 성격에 비추어 직권 심판 대상에 포함

## 4. 「대법관 증원」에 관한 실무추진 TF 연구·검토 결과

### 가. 논의결과 요지

#### ▣ 4인을 증원하되, 6년에 걸쳐 순차로 증원함이 타당함

-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제20차 결정사항)
- 보다 많은 수의 대법관을 증원하여 공법부와 사법부 2개의 전원합의체를 두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항상 선명하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의 사무분담과 관련한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으며, 2개의 전원합의체 사이에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 손상 우려 있음
- 결국 단일한 전원합의체 운영을 하면서도, 상고심사를 포함한 상고사건 심판의 본질적 부분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고, 상고사건을 적시에 처리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1개의 소부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인 대법관 4인 증원이 가장 합리적임
- 아울러 4인의 대법관을 일시에 증원함에 따른 예산상 문제, 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이 4인의 대법관을 일시에 임명함에 따른 정치적 논란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년에 걸쳐 순차로 증원함이 타당함
-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원사무처가 설치되어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이 법원사무처장을 맡게 될 경우 대법관 증원은 3인의 증원으로 족함



- 소부를 현행 4인 3개부에서 4인 4개부로 재판
-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포함 17명 단일의 전원합의체 구성(One Bench)

#### 나. 실무추진 TF 논의결과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안

##### ■ [안]제4조(대법관)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8명으로 한다.

##### ■ [안]부칙: 2023년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 정원 4명 중 최초 1명의 증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1명의 증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 1명의 증원은 2028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1명의 증원은 2030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 5.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3과 같음]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4와 같음]
-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별지 5와 같음]



## IV.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의견수렴 결과 요약

### 1. 개요

- 조사기간: 2022. 8. 24. ~ 2022. 9. 2.
- 조사대상: 전국법원 법관 및 직원
- 조사방법: 코트넷 게시판을 통해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관한 주관식 의견 청취
- 응답자: 27명

### 2. 의견청취결과 요약

- 일부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5명), 다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거나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견 개진하였음
-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이는바,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함
- 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상고심의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원심에서 형식적인 상고이유 심사까지도 할 필요 있음
- 상고심 접수통지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 요소가 있음
- 대법관 1인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중요 사건에 대한 절대 시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중할 필요 있다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상고제도에 대한 큰 틀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부수적으로 추진하면 모를까, 현재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지엽말단적인 제도개선에 해당함
- 대법원의 업무를 고등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의 권리 증진에는 큰 상관 없어 보임. 심리속행사유 심사기간을 늘려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목적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고장 접수일부터 기산할 경우 재판기간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국회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상고제도 개선을 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바,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동력 잃을 우려 있음. 아울러 해당 제도 도입으로 심리불속행 심사기간이 연장되는바, 심리불속행 제도 개선 요구가 붙어질 수밖에 없음

- 원심의 기록관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V.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 의견수렴 결과 요약

### 1. 개요

- 조사기간: 2022. 9. 15. ~ 2022. 9. 23.
- 조사대상: 전국법원 법관 및 직원
- 조사방법: 코트넷 게시판을 통해 제도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관한 주관식 의견 청취
- 응답자 : 49명

### 2. 「대법원 상고심사제」 관련 의견청취결과 요약

- 일부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4명), 다수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거나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였음
-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상고심사제는 상고심 재판을 적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단, 상고이유의 엄격한 심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상고이유를 너그럽게 인정한다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임
- 지금과 같이 많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 결국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기능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상고심사제 등 도입이 필요
-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함. 그러나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고,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그에 비하여 원심의 결론이 바뀌는 비율에 비추어 보면, 상당 부분의 상고를 제한하되 원칙적인 모습인 전원합의체판결을 함으로써 정책 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을 되살릴 필요 있음
- 최고법원은 단순히 3번째 심급의 역할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결단을 내려주는 기능이 중요함
- 제도 도입을 통하여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개선 방향에 찬성

- 신중할 필요 있다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심리불속행 제도와 상고심사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함
- 상고심사제로 상고이유가 실제로 좁혀지는지 의문임. 외부 인사가 참여한 위원회가 정한 것보다 상고이유를 좁힌다면 정당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고이유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 개선이



무용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상고심사제는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 3. 「대법관 증원」 관련 의견청취결과 요약

-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거나 대법관 증원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증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 (15명 정도)

-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국민들의 권익과 사법부 신뢰 향상을 위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중요하고 신중하여야 함.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에 찬성함.
- 상고심사제와 적절한 수의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개선방향에 찬성함. 다만, 하급심 강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구성의 소부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분야별로 소부를 구성하여 소부별로 각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그동안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와 판단을 할 새로운 인력구성이 필요한바, 대법관 증원은 필수적임
- 대법원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고심사제와 대법관 증원 필요함

-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의 주요의견 요지

- 대법관 소규모 증원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고 오히려 전원합의체 기능만 약화시킬 것. 전원합의체 강화라는 목표와 대법관 소수 증원은 모순됨
-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이나 연구원의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결국 하급심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상고심사제가 도입되면 대법관 증원이 불필요
- 대법관 증원으로 소부가 늘어나는 만큼 소부별 판결의 편차도 커질 수 있고, 이는 상고심사제의 취지에 역행



[별지 1]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 -----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p>
<p>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 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28조(상고이유서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① 소송기록을 송부 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상고이유서의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29조(원심법원의 상고각하결정) ① ----- ----- -----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p>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9조의2(상고기록의 송부) 제4  
29조 규정에 따른 상고각하결  
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  
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상  
고이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  
과 상고이유서를 붙여 상고법  
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429조의3(상고법원의 상고각하  
결정)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  
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  
이 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상  
고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  
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  
를 각하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  
4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80조(상고기각결정) ① 상고인  
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제출일로부터 60일 -----  
----- 원심법원-  
-----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은 ----- 상고  
이유서의 부분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0조(상고기각결정) ① -----  
-----  
-----  
-----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  
심법원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아  
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  
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5조의2(재항고이유서의 제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 또는 변  
호인은 재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415조의3(재항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재  
항고기각 결정) ① 재항고인이  
나 변호인이 전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  
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재항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전  
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  
심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  
한 경우, 재항고법원은 결정으  
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이에 대해 상고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4.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  
-----  
-----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  
-----  
-----  
--.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생략)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신 설>

5. (현행과 같음)

6.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7.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8.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9.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10.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11. 상고를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2.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



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

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 제1항제6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제427조(상고이유서 제출) -----  
-----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

제428조(상고이유서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①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상고이유서의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9조(원심법원의 상고각하결정) ①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



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상고를 할 수 있다.

제429조의2(상고기록의 송부) 제429조 규정에 따른 상고각하결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붙여 상고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429조의3(상고법원의 상고각하 결정)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429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429조의4(상고법원의 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상고법원의 심사 결과 제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생략)  
②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423조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42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428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2조(재항고) -----  
-----  
-----대한 재항고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  
4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③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380조(상고기각결정) ① 상고인  
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  
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  
하여야 한다.

<신 설>

제출일로부터 60일 -----  
----- 원심법원-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  
받은 ----- 상고  
이유서의 부분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0조(상고기각결정) ① -----  
-----  
-----  
-----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  
----- . -----  
-----.

②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  
심법원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아  
니한 경우, 상고법원은 결정으  
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



<신 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8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3조(상고이유) ① 상고는 다음 각 호를 이유로 하는 때에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상고법원은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1. 판결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 적용의 통일이 필요한 때
3.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p><u>&lt;신 설&gt;</u></p> <p>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u>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u></p>	<p><u>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u></li> <li>2. <u>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u></li> </ol> <p>제384조(심판범위) ----- ----- -----</p> <p><u>제38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거나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u> ----- -----.</p>
<p><u>&lt;신 설&gt;</u></p>	<p><u>제415조의2(재항고이유서의 제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u></p>



<신 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415조의3(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재항고기각 결정) ① 재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재항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재항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의 기간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별지 5]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관) ① (생략)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조(대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18명</u> -----.